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필수의료특별회계 및 지역의료발전기금 설치〉
■ 김미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695호)

2024.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참고사항	1
IV . 검토의견	2
1. 필수의료 특별회계 설치(안 별표 1)	2
2. 지역의료발전기금 설치 (안 별표 2)	8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미애의원 등 108인

나. 발 의 일 : 2024. 6. 20.

다. 회 부 일 : 2024. 6.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필수의료에 대한 집중적·안정적 지원과 지역의료의 육성·지원을 위해 필수의료특별회계와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이에 따라 특별회계 및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에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별표 1 제24호 신설, 별표 2 제72호 신설).

III.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69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V. 검토의견

1. 필수의료 특별회계 설치(안 별표 1)

현행	개정안
○ [별표 1] 특별회계 설치 근거법률 <신설>	○ [별표 1] 특별회계 설치 근거법률 -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 (필수의료특별회계)

현행법 제4조¹⁾에 따라 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특정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특정세입으로 특정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로써 설치하되, 별표 1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김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69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필수의료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국가재정법」 별표에 추가하려는 것임.

1) 「국가재정법」 제4조(회계구분) ③ 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로써 설치하되, 별표 1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필수의료 특별회계’의 주요 내용〉

구 분	내 용
법률명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
회계명	필수의료특별회계
세 입	◦ 동법 20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다른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 차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세 출	◦ 필수의료 기반 시설의 확충 및 개선 사업 ◦ 필수의료 관련 조사·연구 및 연구개발사업 ◦ 지역의료발전기금으로의 전출 ◦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 그 밖의 특별회계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관 리	◦ 보건복지부장관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필수의료육성법안”이라 함)은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분야와 그 분야를 보장하기 위한 기반이 되는 영역을 집중적·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필수의료육성법안에 따르면 “필수의료”는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의료분야로 그 시급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국가의 정책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것을 의미함.²⁾

최근 대형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가 뇌출혈로 쓰러졌으나 해당

2)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필수의료”란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의료 분야로 그 시급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국가의 정책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지 못하고 전원되면서 제때 수술을 받지 못해 숨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소아청소년과 입원진료를 중단·축소하는 대형병원이 늘어나는 등 중증·필수의료 공급의 부족 및 불균형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음.

이에 따라 정부는 중증·필수의료 확충 및 불균형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① 2035년의 의료인력 수급 부족을 고려한 의료인력의 확충, ② 지역완결 필수의료 확립을 위한 지역의료 강화, ③ 모든 의료인의 보험·공제가입을 전제로 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④ 필수의료 수가를 집중 인상하는 방식의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정책패키지로 제시하는 한편, 정책 패키지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을 밝히고 있음.³⁾

따라서 개정안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맞추어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필수의료 분야 등에 대한 집중적·안정적 지원을 통해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운영되어 칸막이식 재정운용에 따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저해될 수 있어, 현행법 제14조⁴⁾에서는

3)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벼랑 끝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살린다”, 2024. 1. 31.

4) 「국가재정법」 제14조(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에 관한 심사) ①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신설에 관한 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계획서”라 한다)를 기획재정부

중앙관서의 장이 특별회계를 신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① 특별회계 신설의 상대적 효과성, ② 특정 세입·세출 연계로 인한 별도 회계처리 필요성 여부를 심사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국가재정법」 개정안 심사 시 위 요건에 부합하는지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임.⁵⁾

이에 필수의료 특별회계가 위 요건에 부합하는지 살펴보면 우선, ‘특별회계 신설의 상대적 효과성’과 관련하여 국민들은 생명, 건강과 직결된 의료분야인 필수의료를 최소한으로 보장받기 위한 환경 마련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는 연구가 있음.⁶⁾ 이러한 국민적 요구에 따라 특별회계 신설을 통해 필수의료 인프라 구축 및 포괄적인 진료체계를 갖추고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지역거점병원 등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특별회계 신설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

다음으로 ‘특정 세입·세출 연계로 인한 별도 회계처리 필요성’ 여부와 관련하여 필수의료 특별회계의 세입 재원 중 ‘제20조에 따른 일

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신설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기금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제4호 및 제5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자문회의에 자문하여야 한다.

1. 부담금 등 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것

2.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신속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

3.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4. 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기금보다 새로운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5.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5) 다만, 「국가재정법」 제14조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중앙관서의 장의 요청에 따라 특별회계 신설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국회에서 특별회계 신설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이러한 타당성 심사 절차에 구속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는 있음.

6) 대한의사협회 보도자료, 필수의료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2023. 2. 28.

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⁷⁾ 내역을 살펴보면 의료 관련법 및 약사법 관련 과태료 등 필수의료의 지원과 관련성이 있는 특정세입으로 볼 수 있어 필수의료 분야 등에 대한 집중적·안정적 지원을 위한 특정세출과의 연계로 인한 별도 회계처리 필요성은 인정됨. 다만 최근 3년간 해당 전입금의 연 평균액이 1억원 내외로 필수의료 특별회계 세출을 충당하기에는 크지 않으므로, 상당 부분 다른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등에 지원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7)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20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①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세입 예산액을 일반회계로부터 이 회계에 전입하여야 한다.

1. 「의료법」 제85조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9조, 「국민건강보험법」 제119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70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43조, 「의료급여법」 제37조,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과태료
3. 「약사법」 제98조에 따른 과태료.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징수하는 것에 한한다.

② 정부는 제19조 각호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제1항의 전입금 외에 예산에서 정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에 전입한다.

<각 회계연도별 결산 기준 재원별 규모 >

(단위: 만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의료법」 제85조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4,300	4,800	5,20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9조	100	4,600	0
「국민건강보험법」 제119조	1,400	800	1,000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70조	300	120	160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43조	25	0	0
「의료급여법」 제37조	0	0	500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과태료	70	200	3,000
「약사법」 제98조에 따른 과태료	0	0	0
합 계	6,195	10,520	9,860

자료: 기획재정부

한편, 개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인 필수의료육성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동 위원회의 심사과정을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겠음.

동 개정안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및 특별회계 관리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별도의 재정체계 신설에 따라 분절적 지원을 방지하고, 효과적인 사업지원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입법으로 보이며, 일본 등 외국 사례에 미루어 보았을 때 필수의료 확충에 대한 의지 표명 등을 위해서는 특별회계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2. 지역의료발전기금 설치(안 별표 2)

현행	개정안
○ [별표 2] 기금설치 근거법률 <신설>	○ [별표 2] 기금설치 근거법률 -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 (지역의료발전기금)

현행법 제5조⁸⁾에 따라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필수의료육성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지역의료발전기금’의 설치 근거를 「국가재정법」 별표에 추가하려는 것임.

8) 「국가재정법」 제5조(기금의 설치) ①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지역의료발전기금’의 주요 내용〉

구 분	내 용
법률명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지원에 관한 법률안」
기금명	지역의료발전기금
재 원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 기금의 운용수익금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용 도	◦ 지역의료기관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또는 보조 ◦ 의료취약지 대상 필요한 기반 구축 지원 ◦ 지역 간 의료격차 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지역 간 연구개발 역량 격차 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 그 밖에 기금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관 리	◦ 보건복지부장관

필수의료육성법안은 지역 완결적인 의료 제공 추진에 필요한 지역의 인적·물적 의료자원과 지역 내 진료 협력체계(이하 “지역의료”라 함⁹⁾)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정부가 지역의료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2년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에 따르면 서울의 진료실인원 약 1,530만명 중 타지역 환자가 약 638만명

9)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지역의료”란 지역 완결적인 의료 제공 추진에 필요한 지역의 인적·물적 의료자원과 지역 내 진료 협력체계를 말한다.

으로 타지역 환자 유입 비율이 41.7%에 이르고 있으며, 한 시간 내 분만실 접근이 어려운 지역이 전체 시군구의 43%에 이르고 이르는 등 보편적 의료 보장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개정안은 지역 간 의료수준의 격차를 줄이고, 지역의 여건 및 특성에 맞는 지역완결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의료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자금의 확보·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는 자금 이므로, 과도한 기금설치 방지, 재원의 효율적 배분 등을 고려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제14조10)에서는 중앙관서의 장이 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① 기금의 재원과 지출사업 간 연관성, ② 신축적인 사업추진의 필요성, ③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의 안정성, ④ 새로운 기금 도입의 상대적 효과성 여부를 심사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국가재정법」 개정안 심사 시 위 요건에 부합하는지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임.¹¹⁾

10) 「국가재정법」 제14조(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에 관한 심사) ①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신설에 관한 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계획서”라 한다)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신설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기금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제4호 및 제5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자문회의에 자문하여야 한다.

1. 부담금 등 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것

2.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신축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

3.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4. 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기금보다 새로운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5.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이에 따라 지역의료발전기금이 위 요건에 부합하는지 살펴보면, 먼저 ‘기금의 재원과 지출사업 간 연관성’과 관련하여 동 기금의 재원은 ‘정부 및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등’으로 기금의 용도 사업인 지역의료의 육성 및 지원과의 연관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임.

다음으로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기금의 재원을 ‘정부의 출연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등에 의존함에 따라 기금운영의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보임.

다음으로 ‘신축적인 사업 추진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감염병 및 의료인력 이탈 등 비상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지역의료 운영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기금으로 지역의료에 대한 육성 및 지원을 추진할 경우, 선제적 지원 대책을 마련 및 비상상황 발생 시 대응속도 강화 등 의료 수요가 증가하는 사회환경 변화에 대한 보다 능동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그 필요성이 인정됨.

마지막으로 ‘새로운 기금 도입의 상대적 효과성’과 관련하여 지역 의

11) 다만, 「국가재정법」 제14조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중앙관서의 장의 요청에 따라 기금 신설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국회에서 기금 신설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이러한 타당성 심사 절차에 구속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는 있음.

료기관의 육성을 통해 의료 취약지를 대상으로 필요한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 간 연구개발 역량의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지역의료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지역의료의 육성 등에 보다 집중적이고 안정적인 예산투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기금 신설을 통한 정책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기타 회계·기금에서 유사한 지원 사업을 운영 중임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특히 지역의료발전기금의 용도인 의료취약지 등을 대상으로 한 지원의 경우 응급의료기금의 사업으로 이미 지원하고 있는데, 필수의료 특별회계와 지역의료발전기금이 신설되는 경우 사업 간의 중복을 최소화하도록 관련 회계·기금 간의 체제적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임.

<지역의료 관련 기타 회계·기금 사업 사례>

회계구분	세부 사업명	주요 내용	2024년 예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의료 및 분만 취약지 지원	분만취약지 및 의료취약지 지원 및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171억 5,400만원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지역거점공공병원에 필수의료 제공 및 감염병 대응 등을 위한 노후시설·장비 보강, 파견 의료인력·인건비 지원	1,939억 5,500만원
응급의료기금	권역별 심뇌혈관센터 설치 지원	권역별 심뇌혈관센터 설치, 운영 지원 및 심뇌혈관질환관리 중앙지원단 운영	100억 4,800만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 및 의료인력 파견, 응급원격협진 네트워크 운영 등	240억 2,100만원

자료: 기획재정부

한편, 개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인 필수의료육성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동 위원회의 심사과정을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겠음.

동 개정안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기금의 자체재원이 다소 부족하나 지자체 출연금, 필수의료 특별회계 전입금 등을 활용하는 경우 기금의 재원과 사업간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감염병 발생 등 비상상황에도 안정적인 지역·필수의료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축적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기금 신설을 수용한다는 입장임.

아울러 필수의료 특별회계 또는 지역의료발전기금이 신설되는 경우 응급의료기금 중 필수의료에 포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수의료 특별회계 또는 지역의료발전기금과 통합하여 사업효과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관련 부처인 보건복지부 또한 의료개혁의 안정적 뒷받침을 위하여 기금·특별회계 등 별도 재정체계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참고로 지역의료발전기금과 유사한 목적을 가지는 기금 신설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므로 법안 심사 시 참고할 필요가 있겠음.

<필수의료·지역간 의료 격차 해소 관련 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 계류 현황>

구분 (의안번호)	김미애의원안 (제695호, 2024.6.20.)	박덕흠의원안 (제797호, 2024.6.21.)	김윤의원안 (제1623호, 2024.7.11.)	김선민의원안 (제2229호, 2024.7.25.)
기금명	지역의료발전기금	지역의료발전기금	지역·필수의료기금	공공보건의료기금
기금 규정 법률안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기금 재원	◦ 동법 20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다른 특별회계·기금 전입금 ◦ 차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	◦ 정부의 출연금 및 융자금 ◦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 기금 운용 수익금 ◦ 동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발생하는 반환금 ◦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기부금품 ◦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 ◦ 다른 회계·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 동법 제28조에 따라 징수하는 과태료 ◦ 그 밖에 수입금	◦ 정부·지자체 출연금 ◦ 정부·지자체 외 출연금 및 기부금 ◦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 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55에 해당하는 금액 ◦ 기금의 운용수익금 ◦ 그 밖에 수익금	◦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 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55에 해당하는 금액 ◦ 정부의 출연금 및 융자금 ◦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기부금 ◦ 기금운용 수익금 ◦ 그 밖에 수입금
기금 용도	◦ 지역 의료기관 육성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또는 보조 등 ◦ 지역간 의료 격차 완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및 연구개발 역량 강화	◦ 지역 의사 양성을 위한 장학금 지원 및 보수 또는 수당의 지원	◦ 필수의료지역 책임 네트워크 진료 협력 및 의료전달체계 구축 ◦ 필수의료취약지의 시설 및 인력 확충 ◦ 지역의사 의무복무 여건 개선 등을 위한 인적 지원	◦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 및 운영 지원 ◦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 및 충원 ◦ 제7조제1항 각 호의 보건의료 제공 ◦ 제13조에 따른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및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의 시설·장비 확충 및 운영 지원 ◦ 제14조에 따른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시설·장비 확충 및 운영 지원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지원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1 <u><신 설></u>	별표 1 <u>24.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u>
별표 2 <u><신 설></u>	별표 2 <u>72.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지원에 관한 법률」</u>

문의처

02)6788-5152